

사형제도의 위하력 효과에 대한 연구의 최근 동향 : 미국에서 발표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홍 문 기**

국 | 문 | 요 | 약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사형의 살인범죄억제효과에 대한 계량적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내에서 발표된 사형의 살인범죄억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조사보고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사용하여 선행연구논문에서 사용된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과거 연구논문에서 사용되었던 조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하였다: (1) 연구 설계디자인 (research design), (2) 연구 데이터 (research data), (3) 중요 독립변수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of interest), (4)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 그리고 (5) 통제변수 (control variable). 추가로, 사형 제도를 주제로 발표된 국내연구의 동향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사형제도에 관련된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 사형제도, 살인 사건 위하력 효과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The Short-term Deterrent Effect of Executions on Homicides in the United States, 1979-1998”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범죄학 박사.

I. 서론

사형집행이 살인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형제도의 존속과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 모두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¹⁾되었지만 사형 제도에 대한 존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²⁾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사형의 억제력 효과에 대한 자료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내리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형의 위하력 효과에 대한 주장들이 올바른 과학적 연구 결과나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형제도 존폐론의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점이다. 그 이유는 사형제도가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 한 명의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형의 살인범죄위하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면 사형수 개인의 생명권과 같은 기본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사형을 불필요하게 집행하게 되면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형벌 체제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론을 옹호하는 측에서 사형의 살인범죄위하력 효과가 실제로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의 대부분이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집행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예측되는 살인범죄위하력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계량적 분석방법에 대한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양질의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대한 연구논문이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학

- 1) 가장 최근에 집행된 사형은 1997년 12월 30일에 있었으며, 이 날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날 집행된 사형수의 수는 1976년 사형수 27명을 교수형에 처한 이후 최대 규모이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10년이 넘도록 사형 집행이 없는 우리나라를 세계 134번째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하였다.
- 2)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에 합헌 5대 위헌 4의 근소한 차이로 사형제에 대한 합헌을 결정했다. 이 판결은 1996년 헌법소원 때 7대 2로 합헌판결에 이어 2번째이다.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재판관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국회 중심의 정책적 입법 또는 결단의 필요성을 조언하였다.

계에서 사형의 위하력에 관련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의 대부분은 사형제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나 사형수들의 생활 또는 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등에 한정되어 있다.³⁾ 물론, 이런 연구논문의 결과들이 사형집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효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연구 자료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사형의 위하력 효과를 논의하기에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사형제도의 존폐론을 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자료를 직접 분석한 연구결과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계량적 분석 연구에 필요한 국내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은 직접적인 계량적 연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연구 환경의 한계로 인하여, 해당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이루어진 양적 연구논문에서 사용된 계량적 분석 방법에 대한 분석과 정리를 할 것이다. 사형 집행과 그에 따른 살인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서 다양한 연구기법과 자료가 축적된 미국의 선행 연구를 분석과 정리의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학문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오랜 기간 동안 사형의 위하력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어온 계량적 분석 방법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획득한 지식은 기존의 연구 방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존폐론 논의 과정에서 인용되는 잘못된 근거 자료를 구분해 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한국 자료를 이용해서 사형 집행과 그에 따른 살인 범죄 감소에 대한 계량적 연구를 할 계획이 있는 연구자에게 올바른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허일태 (2009)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헝가리에서 이루어진 사형제도 위헌관결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추세를 소개하였다. 또한, 김두식 (2016)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김홍섭 판사와 사형수들 간에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II. 미국에서 발표된 선행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사형 집행과 범죄 위하력 효과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살인 사건의 발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⁴⁾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연속으로 발표되면서, 사형 집행이 살인 사건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 정설로 단기간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연구 자료의 접근과 사용이 이후의 상황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발표된 연구의 결과를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와 연구 자료가 부족하였다.⁵⁾

그러나, 1975년 Isaac Ehrlich은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량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⁶⁾ 기존의 학계의 정설을 뒤집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Ehrlich (1975: 39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33년부터 1967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사형을 한번 집행할 때마다 약 7건에서 8건 정도의 살인 사건이 감소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Ehrlich은 사형 집행이 살인범

4) Hugo Adam Bedau (1997: 138-140)는 1930년대에 진행된 사형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를 비교 정리해 놓았다.

5) 따라서, 1930년 전후에 발표된 연구의 대부분은 연구 자료를 대도시 (metropolitan city) 한곳이나 일부 주 (state)의 법원판결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또한, 살인 사건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설명 변수에 관한 통계 자료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 진행된 Robert Dann의 1935년 연구는 펜실베이니아 (Pennsylvania)주의 필라델피아 카운티 (Philadelphia County)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자료의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이 시기에 발표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 이후에 발표된 선행연구의 상당수는 ‘미국 연방 경찰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합범죄보고서 (the Uniform Crime Reports: UCR)’를 주로 사용해 오고 있다. 통합범죄보고서는 1935년도에 처음 발표되었는데, 이런 자료의 등장은 범죄통계자료의 전국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6) Ehrlich (1975: 415-416)은 자신의 연구 마지막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살인율과 사형제도의 단순 관계만 파악하려 했던 과거 연구와는 다르게, 자신의 연구에서는 살인을 변화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 가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살인 범죄 검거와 유죄 판결 가능성의 영향력을 동시에 검토하였다. 따라서, 살인 범죄 검거와 유죄 판결 가능성의 변화에 따른 사형 집행을 측정하는 주요 독립 변수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of interest)를 만들었으며, 그 변수와 살인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살인율 (homicide rate)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변수 (control variables)의 영향력도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러한 Ehrlich의 연구방법은 후속 연구논문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어서 사용되었다.

죄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Ehrlich의 연구와 같은 결과는 후속 연구 몇 편을 제외하고,⁷⁾ 다수의 후임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살인범죄에 대한 위하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더 미국 학계에서는 정설이 되었다.

계량적 연구방법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관련 통계 자료의 축적이 가능해 지면서, 2000년 전후시기에 이러한 추세가 반영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경제학자들은 패널데이터 (panel data)를 이용해서, 횡단연구 데이터 (cross-sectional data) 뿐만 아니라 시계열 연구 데이터 (time-series data)를 사용했던 과거 연구 때 보다 더 통제된 상황에서 세밀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의 대부분은 사형을 집행할수록 살인사건 발생이 상당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⁸⁾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사 (robustness check)를 하게 되면, 전혀 반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Donohue와 Wolfers (2006: 804-820)는 2000년도 이후에 발표된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논문을 모아서 그 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사를 실시해 보았다. 이 학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던 사형의 살인범죄억제력 효과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형의 위하력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과 살인범죄위하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멈추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미 출판된 과거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메타 분석 (meta-analysis)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Yang과 Lester (2008)의 공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용된 통계적 분석방법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패널 데이터 (panel data)이나 시계열 데이터 (time-series data)를 사용했던 선행연구에서는 사형 집행을 통해서 살인 범죄억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된다고 보고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보다 더 시간적으로 세밀한 계량적 분석방법을 통해서 해당연구가 계속 되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Hjalmarsson (2010)은 사형 집행되기 전과 집행되고 난 후의 Texas

7) James Yunker (1976)와 Stephen Layson (1985)의 연구가 대표적인 예이다.

8)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예는 Mocan과 Gittings의 2003년도 연구, Shepherd의 2005년과 2004년 연구, 그리고 Zimmerman의 2006년과 2004년 연구 등이 있다.

의 주요 도시인 Houston, Dallas, 그리고 San Antonio의 주간 단위 살인사건 발생의 변화를 분석했는데, 살인범죄 억제 효과가 나타났지만, 효과의 정도가 매우 빈약하다고 나왔다.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Land, Teske Jr., 그리고 Zheng (2008)에 의하면, 사형 집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월별 살인 범죄 억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동일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 (2012)에서도, 동일한 사형집행의 범죄위하력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Ⅲ.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계량분석 방법론에 대한 검토

이제부터는 미국에서 발표된 선행연구에서 사용해 왔던 계량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내에 발표된 연구논문에서는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는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에서 사용된 방법론에 대해 소개했던 연구논문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작업은 과거에 발표된 질적으로 훌륭한 연구 결과를 찾아내거나 가까운 미래에 진행될 연구에서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발표된 선행연구에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계량분석 방법을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단락에서는 1. 연구설계모형의 종류; 2.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연구 데이터; 3. 주요 독립변수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of interest); 4.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 그리고, 5. 다양한 범위의 통제변수 (control variables) 의 순서대로 다루도록 하겠다.

1. 연구 설계 (Research Design) 종류

미국에서 발표된 선행연구는 다양한 연구 설계 (research design) 방법을 이용해 왔다. 횡단연구모형 (cross-sectional design), 시계열연구모형 (time-series design), 패널 연구모형 (panel design), 그리고 사전사후연구모형 (before-and-after design)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어 온 연구 설계 방법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데이터의 질적인 발전과 가용성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형 제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사전사후연구모형 (before-and-after design) 이 사용되기도 하였다.⁹⁾

가. 횡단연구분석 모형 (Cross-Sectional Design)

1975년에 Ehrlich의 연구가 발표되기 전의 연구자들은 주로 횡단연구모형 (cross-sectional)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¹⁰⁾ 해당 시기에는 50개 주 (state) 전부를 포함하는 전국 단위의 시계열분석용 연구 자료를 얻기 쉽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획득이 쉬운 연구 자료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주 (state)에서는 횡단연구방법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연구 데이터를 비교적 용이하게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선행 연구의 초기에는 횡단연구모형 (cross-sectional)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으로 인하여 횡단연구분석 모형은 오래 사용되지 못했다. 첫째, 어떠한 선행연구도 미국 주 (state) 전체를 다 포함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모형 방법을 사용해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횡단연구설계 (cross-sectional) 방법만으로는 인과관계 (causal relationship)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횡단연구모형은 어느 한 시점의 특정현상의 단면을 분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경과

9) 미국에서는 1967년부터 1977년까지 약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어떠한 법적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967년부터 1971년까지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2년 *Furman vs. Georgia*의 재판에서 연방 대법원은 사형 제도는 너무 잔인한 형벌 (cruel and unusual punishment)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사형집행에 대한 moratorium (유보)를 선언하였다.

1976년 *Gregg vs. Georgia*의 재판에서 연방 대법원은 흉악한 범죄 (예를 들면, 강력 살인 사건)에 한해서만 사형집행을 허가하였다. 그 후 사형집행이 재개 되어서, 1977년 1월 17일 Utah 주에서 Gary Gilmore가 총살형을 당했다. 이렇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처음으로 집행된 교수형은 대중과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10) 횡단연구모형 (cross-sectional analysis)은 경제학자 Isaac Ehrlich이 1975년에 기념비적인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주로 사용되었다. 연구데이터의 분석 및 처리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횡단연구모형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다. 가장 최근에 횡단연구모형을 사용한 연구는 James Yunker의 2001년 연구이다. 이 연구에 Yunker는 사형을 집행하면, 살인사건 발생이 감소한다고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그 정도가 강력하지 않았다.

에 따른 사형 집행과 살인사건발생의 영향력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내재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나. 시계열연구분석 모형 (Time-Series Design)

횡단연구분석 (cross-sectional)모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계열연구분석 (time-series)모형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시계열연구분석 모형은 데이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집행과 살인사건 발생의 인과관계 (causal relationship)가 시간경과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계열연구분석 (time-series)방법에도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미국의 주 (state)하나 하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사라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모든 주가 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뿐만 아니라, 전체 50개 주 (state) 중에서 5개에서 8개정도의 주 (state)만이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¹¹⁾ 이런 상황에서, 전체 50개 주의 특징을 하나의 숫자만으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더라도, 사형집행을 둘러싼 미묘한 영향과 변화를 이 분석방법으로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살인사건은 사형집행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 증가되거나 감소되기도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살인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각각의 주 (state)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다. 패널연구분석 모형 (Panel Design)

오래전부터 지적 받아 왔던 횡단연구분석 (cross-sectional)모형과 시계열연구분석 (time-series)모형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패널연구분석 (panel design)모형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¹²⁾ 예를 들면, 사형을

11)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1일 시점에서, 전체 50개 주 (state)와 District of Columbia에서 31개 주가 사형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에 사형을 자주 집행하는 주는 Texas, Missouri, Georgia, Florida, Virginia, 그리고 Oklahoma 뿐이다.

12) 패널 연구분석의 필요성을 주장 했던 학자들은 Avio (1998), Cameron (1994), Chamlin, Grasmick, Bursik, 과 Cochran (1992), Zimring과 Hawkins (1973) 등이 있다.

집행하게 되면 살인범죄위하력(deterrence)을 발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주 (state)가 가지고 있는 살인범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이전 두 연구분석 모형보다도 더 많은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있다.¹³⁾

라. 사전사후연구분석 모형 (Before-and-After Design)

미국 사형 제도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사전사후연구분석 모형이 사형 위하력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972년 이후 약 6년 동안 사형 집행을 공식적으로 금지시킨 기간이 있었다. 사형제도의 유예가 철폐되자마자, 사형집행을 했던 주(state)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보유하게 되자 과거처럼 교수형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다.¹⁴⁾ 특히, 다른 사형집행보다는 더 강력한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형집행보다 더 강력한 범죄억제효과 (deterrent effect)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 범죄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¹⁵⁾

이러한 연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몇 개의 주 (state)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렵다.¹⁶⁾ 그리고, 사

13) Zimmerman (2004)의 주장에 의하면, 패널연구분석 (panel analysis)모형은 횡단연구분석 (cross-sectional)모형이나 시계열연구분석 (time-series)모형보다 더 많은 데이터 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 50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횡단연구분석 (cross-sectional) 모형이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 수는 50 (50주 전체*1년)개이다. 시계열연구분석 (time-series)모형의 경우에는 시간변화의 횟수에 따라 데이터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50년간의 데이터가 있다면,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 수는 50 (50년*미국 전체)개이다. 동일한 조건 (50년간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패널연구분석(panel analysis)을 사용하게 되면, 2,500 (50년*50개주 전체)개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

14) Jacoby, Bronson, Wilczak, Mack, Suter, Xu, Rosenmerkel (2008: 183)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사형 집행의 대부분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사형이 미국 전체나 특정한 주 한곳에서 처음으로 집행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역(state과 adjacent states) 언론의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15) 사전사후연구분석 모형을 사용했던 학자들은 Cochran, Chamlin, and Seth (1994), Cochran and Chamlin (2000), Thompson (1999, 1997) 등이 있다.

전사후연구분석 모형은 사형집행 전과 후의 살인범죄발생의 수의 변화를 단순하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살인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¹⁷⁾

2. 연구데이터 (Research Data)의 종류

가. 경찰 데이터 (UCR 또는 SHR)

사형집행의 살인범죄위하력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 목적이기 때문에, 설문지(survey)를 이용한 연구 방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적인 데이터(public data)를 이용하는 방식이 사형의 억제력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미국 연방 경찰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에서 매년 발표하는 범죄통계자료(Uniform Crime Reports)를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다. 이렇게 많은 연구가 범죄통계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중범죄살인(felony murder)에 대해서, 범죄통계자료(UCR)보다 더 체계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범죄통계자료에도 한계점이 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경찰부서에서는 범죄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경찰부서 모두가 의무적으로 UCR 정보 수집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거의 18,000 개 정도의 경찰서에서 통계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참여한다고 하지만, 이 수치는 전체 경찰서의 90% 정도만 UCR 정보 수집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된 살인 사건이 연간범죄통계자료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또한, UCR 데이터는 8개의 지표범죄(Index Crime)에 대한 자료를 연도별 지역

16) 바로 앞에서 언급한 학자들은 Oklahoma, Arizona, California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형 집행에 따른 살인범죄위하력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공통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살인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변수를 통계적 통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

17) Sam McFarland는 1983년 연구를 통해서, 사형 집행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여러 주에서 집행된 4개의 교수형 중에서 오직 한 교수형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살인범죄 억제력을 발생한다고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McFarland (1983: 1021)는 살인범죄 발생의 감소 원인을 사형 집행에서 아니라 집행기간을 전후로 극심한 한파와 폭설이 미국 전체를 뒤덮었던 점이 그 이유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별 (state, county, 그리고 city)로 분류하여 특정 지역의 연도별 범죄율만 요약해서 보고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인사건을 종류별로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전의 UCR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가 자주 지적받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런 UCR 데이터는 중범죄살인 (felony murder)과 비중범죄살인 (non-felony murder)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모살과 유의적 고살 (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ughter)이라는 하나의 범주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사형의 살인범죄위하력에 대한 범죄 이론 (General Deterrence Theory of Capital Punishment)에 따르면, 잠재적인 살인 범죄자들은 다른 사형수의 사형 집행에 대한 사실을 뉴스 등의 창구를 통해서 듣거나 보게 되면서, 사형과 같은 무거운 형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앞으로 있을지 모를 자신들의 살인 가담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범죄살인 (non-felony murder)과 중범죄살인 (felony murder)을 분리해서 사형 위하력 연구에서 중범죄살인만을 측정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관점에서 보면, 연간범죄통계자료 (UCR)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경찰청 (FBI)에서는 살인 사건에 대해 보다 더 세밀한 자료를 제공하는 새로운 경찰 범죄통계자료인 (Supplementary Homicide Reports: SHR) 을 1982년부터 매년 발표해 왔다. 이 통계 자료에는 살인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연도와 달),¹⁸⁾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간략한 신상정보 (나이, 인종,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 그리고 사용된 흉기에 대한 정보 등이 나와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살인사건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용해서, 전체 연간 살인 사건 발생 건수에서 중범죄살인 (felony murder)에 대한 정보를 따로 산출해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방법론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선행 연구 중 일부는 사형의 살인범죄 위하력이 중범죄살인뿐만 아니라 비중범죄살인에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지에 대하여 분류해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¹⁹⁾ 이러한 연구 접근 방법을 통해서 사형을

18) 연도별 살인 사건 정도만 제공하는 연간범죄통계자료 (UCR)와는 다르게, Supplementary Homicide Reports (SHR)을 사용하게 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사형 집행의 위하력 효과를 월별 단위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19) 대표적으로 Thompson (1997)의 1992년 Arizona에서 집행된 Donald Eugene Harding의 사형 집행

집행하게 되면, ‘위하력 효과 (general deterrent effect)’ 뿐만 아니라 ‘반위하력 효과 (brutalization effect)’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는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비중범죄살인 (non-felony murder)과 중범죄살인 (felony murder)를 구분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게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주 (state) 한 개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소수의 선행연구는 FBI에서 매년 발행하는 경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연구대상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 접촉해서 직접 관련 데이터를 얻기도 한다.²⁰⁾ 이런 경우에는 연구대상지역이 대도시 (metropolitan cities) 또는 주 (state) 하나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나. 비경찰 데이터 (Mortality Detail Files)

경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선행연구의 수에 비해서는 매우 적지만, 선행연구 중에 일부가 경찰분야가 아닌 곳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기도 한다.²¹⁾ 이런 선행연구들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 매년 제공하는 Mortality Detail Files 데이터를 이용해 왔다.²²⁾ 이 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경찰 데이터 (police data)와는 다르게 살인 사건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고될 가능성 (under-reporting)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모든 살인사건 피해자의 사체는 의무적으로 검시관의 검시를 또는 부검의의 부검소견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으로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

에 대한 연구, Thompson (1999)의 1992년 California에서 집행된 Robert Alton Harris의 사형 집행에 대한 연구, Cochran과 Chamlin (2000)의 1992년 California에서 집행된 Robert Alton Harris의 사형 집행에 대한 연구, Cochran, Chamlin과 Seth (1994)의 1990년 Oklahoma에서 집행된 Charles Troy Coleman의 사형집행에 대한 연구가 있다.

20) 대표적인 예로는 Hjalmarsson (2009) Stolzenberg와 D'Alessio (2004), 그리고 Brumm과 Cloninger (1996)의 연구가 있다.

21) Jeffrey Grogger (1990)와 Phillips and Hensley (1984)의 연구가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를 이용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22) Mortality Detail Files는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사건 피해자의 사체, 현장상황을 분석하여 1차적인 사인을 알아내는 역할을 하는 검시관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통계자료이다.

다. 따라서, Mortality Detail Files에서 신고된 살인사건이 누락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 했지만, 경찰 데이터인 UCR이나 SHR은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했던 살인사건이 누락되어서 통계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²³⁾

Mortality Detail Files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은 경찰 데이터에는 없는 자료가 제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Mortality Detail Files에서는 살인사건이 발생한 날짜 (the exact date of the occurrence of a murder)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학자 또는 경제학자들이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 분야에 중요한 연구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오래전부터 다수의 범죄학자 또는 경제학자들은 사형집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살인사건위하력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다.²⁴⁾ 다시 말하면, 일 (day) 또는 주 (week) 단위 데이터처럼 시간적으로 가장 세밀한 데이터를 사용해야만, 이러한 이론에서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연구 조건 내에서 사형집행을 통한 살인범죄위하력을 올바르게 측정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사형집행을 통해서 범죄억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이론이나 주장들을 토대로 한다면, 그러한 주장을 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년 (yearly) 또는 월 (monthly) 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이러한 데이터들은 사형집행을 전후로 해서 시간

23) UCR에서 1군 범죄 (Part 1 Offense) 또는 지표범죄 (Index crime)라고 부르는 8개 범죄인데, 살인, 강간, 강도, 가중 폭행(상해) 등 4개 범죄와 재산범죄인 주거침입, 절도, 자동차절도, 방화 4개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1군 범죄 중에서 살인 사건이 가장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미신고될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특정 관할 구역의 경찰서에서 자료를 UCR 범죄통계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살인 사건통계가 집계되지 않는다.

24) 오래전부터 Johannes Andenaes (1952: 193)와 Phillips와 Hensley (1984) 등과 같은 학자들이 범죄 위하력 효과 (deterrent effect) 가 금방 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Phillips와 Hensley (1984)는 이러한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가장 세밀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 실제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였다. 예를 들면, Katz, Levitt, 그리고 Shustorovich의 2003년 연구, Donohue 그리고 Wolfers의 2005년 연구, 그리고 Hjalmarsson의 2009년 연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

적으로 미세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살인범죄위하력을 측정하기에는 너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사형집행에 따른 살인범죄위하력에 대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가장 세밀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오고 있다.²⁶⁾

3. 주요 독립변수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of Interest) 종류

가. 사형집행의 실행 여부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해 왔던 주요 독립변수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of interest)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주요 독립변수는 Ehrlich이 1975년 자신의 선구자적인 논문에서 사용했던 방식이다. 해당년도에 집행된 교수형 수와 동일한 년도에 판결된 중범죄살인사건의 유죄 판결 수와 중범죄살인사건의 체포 수의 비율을 주요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²⁷⁾ 이런 형태의 주요 독립변수는 기존의 연구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다음과 같이 극복할 수 있었다.²⁸⁾

사형은 형법체계 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그런 까닭에,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에서 사형을 선고하거나 교수형이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²⁹⁾ 그 결과로 인하여, 연간

26) 대표적인 학자는 Grogger (1990), Phillips와 Hensley (1994) 등이 있다.

27) Isaac Ehrlich는 다음과 같은 수학 공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주요 독립변수를 구하였다: (특정 연도 t의 집행된 교수형의 수) ÷ (특정 연도 전 해 t-1의 판결된 중범죄살인사건의 유죄 판결의 수 ÷ 특정연도 전 해 t-1의 체포된 중범죄살인사건의 체포 수). Ehrlich (1975)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중범죄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평균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형 집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수학 공식 상으로 유죄판결과 사형집행의 시간적인 차이를 1년 정도로 잡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범죄살인사건의 유죄 판결의 수가 급증하면서, 판결을 최종 확정된 이후 사형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 원인으로 인하여, 후속 연구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였다. 예를 들면, 수학 공식 상으로 유죄판결과 사형집행의 시간적인 차이를 5년 또는 10년으로 늘렸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후속 연구는 Dezhbakhsh, Rubin, 그리고 Shepherd (2003)가 대표적이다.

28) Isaac Ehrlich의 1975년 연구 이전에 선행연구 대부분은 연간 사형집행 건수 또는 주별 사형 제도 존재 유무를 주요 독립변수로 사용해 왔다.

29) Donohue와 Wolfers (2005: 794)의 의하면, 1976년 Gregg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후로 미국에서 집행되는 사형의 수는 형법체계에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적게 집행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National Judicial Reporting Program (2006)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중범죄살인사건에

집행되는 사형의 수는 연간 집행되는 다른 형벌의 수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매 해마다 집행된 연간사형의 수는 일정할 수밖에 없다. 연간 집행된 사형의 건수를 주요 독립 변수로 이용하게 되면, Ehrlich 이전의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제시한 것처럼, 사형집행에는 범죄억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Ehrlich 이전의 연구들은 살인 유죄 판결을 받고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영할 수 없었다. 그러나, Ehrlich의 방법론은 이런 사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Ehrlich의 연구 방법과 결과는 후속 연구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그의 연구를 통해서 소개된 이 주요 독립변수의 방법은 그 이후에도 사형집행의 범죄억제효과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용되어 왔다.

나. 형법 체계상 사형제도의 존재 유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주요 독립변수는 해당 주 (state)가 형법체계상으로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이러한 단순이분법적인 구분의 독립변수는 형법상 사형제도가 주 형법 체계상으로 존재하는 주 (death penalty states)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주 (non-death penalty states)의 두 개를 구분하는 역할만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미국의 주 (state)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다. 세 가지 유형은 (1) 사형 제도가 형법 체계상 존재하면서, 사형을 활발하게 꾸준히 집행하는 주 (death penalty states), (2) 사형 제도가 주 형법 체계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주 (inactive death penalty states), 그리고 (3) 사형 제도가 주 (state) 형법 제도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주 (non-death penalty states) 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이분법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사형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는 주와 사형 제도가 형법 제도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주를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해 낼 수 없게

대한 형벌은 교도소 금고형의 수가 사형 집행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고되었다.

된다.³⁰⁾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형을 집행하는 주(death penalty state) 모두가 매 년마다 동일한 숫자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형 집행 관습을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연간 사형집행 수가 언제나 전미 최고 주(state)인 Texas와 연간 사형집행 수가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인 주가 동일한 살인범죄위하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Texas와 같은 주에서 잠재적인 살인범이 느낄 수 있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 사형집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위압감은 연간 사형집행 수가 극도로 낮거나 없는 주에서의 잠재적인 살인범이 느낄 수 있는 위압감과는 결코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주요 독립변수는 통계적 연구에서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이 주요 독립변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state)의 연간 사형집행 개수를 주요 독립변수로 만들어서 통계적 분석을 할 때 추가해서 분석해야만 한다. 아니면, Ehrlich이 1975년에 만들었던 주요 독립변수 측정 방법을 이용해야만 할 것이다.

다. 역사적인 사형집행 (Historical Execution Events)

선행연구에서 세 번째로 자주 사용되어 왔던 주요 독립변수 측정 방법은 오랜 기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주(state)에서 집행된 사형의 예를 이용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970년대 초반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내렸던 사형집행 유예기간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정식으로 유예기간 종료가 선언된 후에 몇 개의 주(death penalty states)들이 그동안 미루어 왔던 사형을 처음으로 집행했다. 몇 개의 선행연구가 이러한 주요 독립변수 측정 방법을 이용해 왔다. 유예 기간 이후 처음으로 집행된 사형 일자의 전과 후로 나누어서 발생된 살인범죄의 수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이런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앞둔 사형에 대해 대중과 언론이 크나 큰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³¹⁾ 살인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30)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는 주(inactive death penalty states)는 사형제도가 없는 주(non-death penalty states)와 혼동을 하게 된다.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형 또는 금고형과 같은 형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낮은 사형과 비교해 보더라도, 살인범죄 위하력은 강력해 진다는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요 독립변수는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형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다른 사형들은 대부분 대중과 언론의 관심 밖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³²⁾ 따라서, 연구 결과가 살인범죄위하력이 있다고 제시하더라도, 그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단순한 전후비교연구 (before-and-after analysis) 방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살인사건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의 종류

소수의 학자들이 강도 범죄와 같은 비살인범죄를 종속 변수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의 대부분은 양형의 비례성 원칙 (principle of proportionality)³³⁾에 의거하여, 살인범죄를 종속 변수로 이용해왔다. 따라서, 살인범죄를 종속 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미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중범죄살인 (felony murder)과 비중범죄살인 (non-felony murder)을 구분해서 종속 변수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³⁴⁾과 중범죄살인 (felony murder)과 비중범죄살인 (non-felony murder)을 구분하지 않고 종속 변수로 사용해야

31) McFarland (1983)와 Jacoby, Bronson, Wilczak, Mack, Suter, Xu, Rosenmerkel (2008)와 이러한 주장을 했었다.

32) Jacoby, Bronson, Wilczak, Mack, Suter, Xu, Rosenmerkel (2008)의 연구에 의하면,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어린이나 여성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이 지속적으로 집행되더라도, 언론과 대중의 사형 집행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기사를 덜 다루게 된다고 한다.

33) 미국에서는 사형 확정 판결이 중범죄살인 (felony murder)만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34) 대표적으로, Bailey (1983), Fagan, Zimring과 Geller (2006), Peterson과 Bailey (1991) 등이 발표한 연구에서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어 있다.

한다는 주장³⁵⁾이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논의의 배경은 범죄억제 이론 (General Deterrence Theory for Capital Punishment)으로부터 시작 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형집행과 사형수의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잠재적인 살인 범죄자 그룹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받게 될 형벌 (예를 들면, 사형)의 결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모의하고 있던 또는 모의하게 될 살인 계획을 취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집행이 살인사건을 억제하거나 줄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에 대한 연구는 중범죄살인 (felony murder)만을 사용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연구에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사용하는 FBI의 연간 범죄통계자료 (UCR) 데이터에서는 중범죄살인 (felony murder)과 비중범죄살인 (non-felony murder)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기록하지 않는다. 살인범죄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Supplementary Homicide Reports (SHR)는 살인범죄 하나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보고되지만, 경찰이 그 정보의 대부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두 종류의 살인 사건을 정확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분리 작업을 간혹 가다가 시도하기는 하지만, 매년마다 전국 단위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을 불완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살인사건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 것은 시간적 금전적 낭비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두 종류의 살인사건의 구분이 올바르게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을 내재되어 있다.³⁶⁾

뿐만 아니라, 몇몇의 저명한 범죄학자들은 중범죄살인 (felony murder)과 비중범죄살인 (non-felony murder)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³⁷⁾ 따라서,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의 대부분은 중범죄살인과 비중범죄

35) 미국의 범죄학자 Gary Kleck (1979)이 이러한 주장을 자신의 연구에 처음으로 반영했으며, Kovandzic, Vieraitis와 Boots (2009), Shepherd (2004), Stolzenberg와 D'Alessio (1994) 등이 발표한 연구들이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였다.

36) Dezhbakhsh, Rubin, 그리고 Shepherd은 자신들의 2003년도 연구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37) Gary Kleck (1979: 890)에 의하면, 사형집행의 억제력 효과를 중범죄살인에만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살인자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받게 될 형벌에 대해 심사숙고 하는 경우에만 위하력의 효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형벌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도 위하력의 효과는 여전히 발생되기 때문이다.

죄살인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의 반위하력 효과 (brutalization effect)의 존재 여부를 연구하기 위하여, 중범죄살인 (felony murder)와 비중범죄살인 (non-felony murder)를 분류해서 비교하는 연구가 여전히 발표되어 오고 있다.³⁸⁾

5. 통제변수 (Control Variable)의 종류

미국에서 발표된 사형집행의 살인억제력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의 특징은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통제변수 (control variable) 또는 해당 통제변수의 프록시 (proxies)가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계량경제모델 (econometric model) 방법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³⁹⁾ 주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계량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강력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이론으로 설명된 이상적인 모형과 가장 근접한 계량경제모델이 그렇지 못한 경제모델보다는 사형집행과 살인사건 발생의 인과관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통제변수가 되도록이면 많이 포함된 계량경제모델이 그렇지 못한 모델보다 사형집행의 억제력 효과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사형집행의 살인 범죄 억제 효과와 다른 통제변수의 분석되지 않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구분해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연구자의 대다수인 경제학자들의 변수 측정 방법에 대한 태도가 범죄학자나 심리학자의 그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⁴⁰⁾ 일반적으로 비경제학자들은 변수 (variable)를 측정할 때, 타당성 (validity), 신뢰도 (reliability), 그리고 조작화 (operationalization)의 관점에서 변수 측정을 엄격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이 있다. 변수 측정이

38) 가장 최근에는 Land, Teske Jr., 그리고 Zheng의 2012년도 연구논문이 있다. 이 연구에서 non-felony homicide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위하력 효과가 발견되었다.

39) 이러한 주장은 Fox와 Radelet (1989: 31-34)에 의하여 잘 요약되어 있다.

40) 이러한 주장은 Fox와 Radelet (1989: 35)에 의하여 잘 요약되어 있다.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수와 비슷한 프록시 (proxies)의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통제변수와 프록시를 사용해서 억제력 효과 이론에 근접한 계량분석모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사 (robustness check)’도 해 오고 있다.⁴¹⁾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사형집행을 통해서 살인범죄 억제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더라도, 사형의 억제력 효과의 이론에 연관된 통제변수를 추가로 포함시켜서 통계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발견된 사형의 억제력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 되었다. 따라서, 사형의 살인억제력 효과라고 받아들여졌던 것이 실제로는 분석되지 않았던 통제변수의 감추어진 효과였던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론상으로 살인 사건 발생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을 사용해서 해당 선행연구의 결과를 다시 분석해 보면, 사형의 위하력 효과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연구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범죄학자 Gary Kleck이 1979년에 발표했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Kleck은 ‘총기의 입수 용이성 (gun availability)’이라는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연구에서 총기의 입수 용이성이라는 통제변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분석 하였다. 해당 통제변수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형의 살인범죄억제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없는 경우에는 위하력 효과가 통계적으로 완전하게 없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발견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Kleck 교수의 ‘총기의 입수 용이성 (gun availability)’라는 통제변수를 해당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 받았으며, 자신들의 연구에 꾸준히 포함시켜왔다.

학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인정되는 통제변수 (control variable) 중에 하나는 중범죄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받게 되는 장기 유기 징역형 (long-term imprisonment) 또는 무기 징역형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의 기간이다.⁴²⁾ 사형을 활발하

41) 예를 들면, Ehrlich (1975) 연구에서 설정했던 연구 자료 기간 (1933-67)에 기간을 늘리거나, 기간을 줄이게 되면,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살인 사건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의 대표적인 예는 Bowers와 Pierce가 1975년에 발표했던 연구이다. 그 이후에도, Donohue와 Wolfers (2006: 811-813)도 유사한 방법을 사용해서, 2000년대 이후에 실행된 연구 결과 (대표적으로, Katz, Levitt, 그리고 Shustorovich의 (2003)의 연구가 있다)에 대한 강건성 검사 (robustness check)를 실시했다.

게 집행하는 주 (state)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징은 중범죄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장기간의 유기 징역형 내지 종신형을 사형 제도가 폐지되었거나 거의 집행하지 않는 주 (state)보다 더 자주 집행하는 경향을 나타낸다.⁴³⁾ 따라서, 이런 장기 유기 징역형 또는 종신형이 살인 범죄율에 끼치는 영향을 자신들의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고려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되어 왔다.⁴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발표된 선행연구를 보더라도, 이 통제변수를 실제로 계량분석모델에 포함시킨 선행연구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과거에 출판된 연구의 방법론을 분석한 범죄학자 Daniel Nagin은 자신의 2013년 연구논문에서 미래 연구에서는 이런 통제변수를 계량 분석 모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되면, 사형의 살인범죄위하력 효과 (deterrent effect)를 가장 엄격하게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연구에서 고려해볼만한 통제변수로는 사형집행을 전과 후의 경찰인력 배치의 차이이다. Nagin과 Pepper은 자신들의 2012년 연구논문에서 사형을 집행하기 전과 후에는 만약에 발생하게 될 사회 질서 혼란을 막기 위하여, 경찰 인력을 증가해서 배치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정복 순찰 경찰의 존재 (presence of law enforcement)는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죄 억제 효과 (deterrent effect)’를 가지고 있다고 범죄학자들에게 인정받아 오고 있다. 사형 집행을 통해서 발생하는 억제력 효과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를 구분하기 위해서, 미래 연구에서는 이러한

42) 이러한 통제변수를 통계적 계량분석모델에 포함시키는 것은 범죄 이론적인 관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형집행은 살인범죄억제효과 (deterrent effect)의 관점에서 평가받고 있는 반면, 장기 유기 징역형 또는 종신형은 카파시테이티브 효과 (capacitative effect)의 관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이론에서 의도한 대로 사형집행의 살인범죄억제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형벌의 결과에 두려움을 가진 잠재적인 살인자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게 되어서 자신의 태도 또는 사고방식을 우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반대로 카파시티 효과 (capacitative effect)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살인자의 태도 또는 사고방식이 변화할 필요 없이, 단순히 살인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교도소 징역형을 이용해서 사전에 박탈해야 한다. 그러므로, 두 종류의 형벌을 동시에 놓고 통계적 분석을 한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범죄 이론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43) Daniel Nagin (2013: 91-92)에 의하면, 중범죄살인으로 기소되었던 형사사건 중에서 매우 극소수만 사형으로, 대다수는 유기 징역형과 종신형을 징역으로 받는다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Texas와 Virginia 주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로 들었다.

44) Jeffrey Fagan은 자신의 2006년 연구논문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주장을 펼쳤다.

통제변수 (the deterrent effect of deployment of law enforcement)를 계량분석모형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통제 변수 (regional dummy variable)와 시간통제 변수 (temporal dummy variable)를 사용해 왔다. 많은 학자들이 이론에서 설명되는 요인들을 자신들의 계량분석모델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해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완전하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Fagan (2006)과 같은 학자들은 살인사건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통제요인을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계량분석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통제 변수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이러한 공간적 시간적 통제 변수들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 시간적 통제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IV.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의 최근 추세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발표된 사형제도에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형제도에 관련된 국내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연구방향 제시하고, 미래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할 것이다.

이 연구논문의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분석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사형의 살인억제력 효과에 대한 연구를 193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많은 연구실적을 축적한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사형의 살인위하력 효과는 한국 학계에서는 주요 관심연구주제 대상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사형제도의 존재와 폐지에 대한 연구에 치중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 추세 속에서 사형의 살인범죄억제력 효과의 존재여부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근거 중의 하나로 이용되기만 해 왔을 뿐이다.⁴⁵⁾

한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형의 위하력 효과에 대한 존재 유무를 비합리적인 방식

45) 위하력 효과이외에도, 종교적, 도덕적, 오관 가능성, 국가 이미지적 관점에서 사형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으로 사형제도의 존폐론 연구에서 인용하고 있다. 발표된 연구의 거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형법체계상에서 사형 제도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내재된 문제점은 계량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흔하게 발견되는 추론 방식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 중에 몇 개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서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살인범죄위하력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연관이 없는 자료에 대한 그릇된 판단에 근거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한국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형제도 존폐론을 주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비합리적인 결론 도출 과정은 주로 종교적⁴⁶⁾ 또는 인권적인⁴⁷⁾의 관점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연구논문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런 연구들은 특정 종교의 사형제도에 대한 관점 또는 인권적인 관점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형의 살인사건위하력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전혀 강조되지 않는다. 이러한 분야의 논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형의 위하력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 절차 없이 사형 제도의 유지와 존폐를 단순히 결정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를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살인위하력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형 제도를 계속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위하력 효과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잠재적인 살인피해자들의 생명을 사전에 보호하지 못하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 연구의 두 번째 특징은 특정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집행된 사형의 형태를 분

46) 박상기 교수 (2006: 55-56)는 자신의 연구논문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종교단체가 진행한 대표적인 사형폐지 운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비록, 사형제도 폐지론자는 아니지만, 박상기 교수는 생명존중 사상에 입각한 종교단체의 사형폐지 주장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된다고 기술하였지만, 사형 제도에 대한 종교적 관점과 세속법의 관점에서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경우에는 형사 정책적 관점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암시하였다.

47)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표적인 예가 2016년에 발표된 김두식 변호사의 연구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과거의 사형수 다수와 김홍섭 판사가 주고받았던 편지 내용을 분석했다. 저자는 사형수들의 심리적 변화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참회를 지적하면서,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 대한민국 정권에서 집행된 사형에 대한 분석을 이룬 연구들이 그 대표적이다.⁴⁸⁾ 이런 연구는 비교적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과거 정권에서 사형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형집행을 통해서 살인범죄 위하력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류의 연구들이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사형 제도를 보유한 외국국가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사형 제도를 운영해 왔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⁴⁹⁾ 이러한 부류의 연구들을 통해서, 사형 제도 운영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다 합리적인 사형제도 운영 방법을 습득할 수 있으며, 그렇게 얻어진 지식을 한국의 사형제도에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사이에 문화, 경제, 그리고 형법체계상으로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간 사형제도의 단순 비교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형제도의 범죄 위하력이나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형 제도의 유지 또는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것이다.

요약하면,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의 거의 대부분은 사형의 살인억제력 효과에 대하여 직접 검증하지 않고서, 위하력 효과의 존재를 부정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국내학계가 축적해 온 연구논문의 결과는 학자 또는 연구자 개개인의 순수한 탐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정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받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계점이 뚜렷하게 보이는 연구 결과에만 의존해서, 국내에서 사

48) 이덕인 교수가 이 분야에서 독특한 연구 성과를 올렸다. 이덕인 교수는 1950년대 대한민국의 사형 제도를 연구한 논문을 2015년에 제 3공화국과 유신체제에 집행된 사형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2014년에 발표하였다. 이 연구논문에서 이덕인 교수는 국내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49) 대표적인 예로 박상기 교수와 허일태 교수의 연구가 있다. 예를 들면, 박상기 교수는 2006년에 발표된 연구논문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허일태 교수가 2009년에 발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헝가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박상기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양형기준의 변화와 같은 대한민국의 사형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허일태 교수는 남아프리카와 헝가리의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과문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형을 집행하더라도 살인범죄억제력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주장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국내 형법 체계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에 커다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형제도와 관련된 미래연구는 사형의 살인범죄억제력 효과의 존재 유무에 대한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인 증거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V. 결론

사형의 위하력 효과에 대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는 미국에서 발표된 선행 연구의 연구 방법론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선택의 주요 이유는 우리나라보다는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져 있고,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 작업을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사형의 위하력 효과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의 사형의 위하력에 대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주목해 볼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작업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국내 사형의 위하력에 대한 계량적 연구가 부족했던 이유는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 작업으로 인하여, 사형의 위하력에 대한 계량적 연구가 국내에서 당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공식적인 연구 자료 구축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이러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내 학계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작업에서 한 것처럼, 앞으로 국내와 국외에서 발표되는 사형의 살인범죄 위하력에 대한 연구 동향을 꾸준히 따라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수준 높은 계량적 양적 분석 방법을 이용한 연구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신석호, 「23명 무더기 死刑 집행」, 『동아일보』, 1997.12.31., 39면.
- 김두식 (2016). “1950-60년대 사형수들의 현실과 내면세계: 김홍섭 판사에게 보낸 사형수들의 편지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458: 50-68.
- 박상기 (2006).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 이덕인 (2015). “1950년대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형사정책연구』. 26: 5-57.
- 이덕인 (2014). “박정희정권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 제3공화국 및 유신체제의 일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5: 69-122.
- 허일태 (2009).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세계적 추세 -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헝가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을 포함하여.” 『동아법학』. 45: 263-298.

[국외문헌]

- Andenaes, Johannes. (1952). General prevention: illusion or reality?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Vol. 43: 176-198.
- Avio, K.L. (1998). Capital Punishment in Peter Newman, ed.,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and the Law*. London: Macmillan Reference Limited.
-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 (2016). Database of all executions carried out in the U.S., including states and exact dates. Available at <http://www.deathpenaltyinfo.org/executions-united-states>.
- Bowers, William J. and Pierce, Glenn L. (1975). The Illustration of Deterrence in Isaac Ehrlich's Research on Capital Punishment. *The Yale Law Journal*,

- Vol. 85 (2): 187-208.
- Brumm, Harold J., and Dale O. Cloninger. (1996). Perceived risk of punishment and the commission of homicides: A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31: 1-11.
- Cameron, Samuel. (1994). A review of the econometric evidence on the effects of capital punishment. *Journal of Socio-Economics*, Vol. 23 (4): 197-214.
- Chamlin, Mitchell B., Harold G. Grasmick, Robert J. Bursik, Jr., and John K. Cochran. (1992). Time Aggregation and Time Lag in Macro-Level Deterrence Research. *Criminology*, Vol. 30: 377 - 395.
- Cochran, John. K., and Michelle B. Chamlin. (2000). Deterrence and brutalization: The dual effects of executions. *Justice Quarterly*, Vol. 17: 685-706.
- Cochran, John K., Michelle B. Chamlin, and Mark Seth. (1994). Deterrence or brutalization? An impact assessment of Oklahoma's return to capital punishment. *Criminology*, Vol. 32 (1): 107-134.
- Dann, Robert. (1935).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Friend's Social Service Series*, Vol. 29: 1-20.
- Dezhbakhsh, Hashem, Paul H. Rubin, and Joanna M. Shepherd. (2003). Does capital punishment have a deterrent effect? New evidence from post-moratorium panel data. *American Law and Economics Review*, Vol. 5: 344-376.
- Donohue, John J. and Wolfers, Justine. (2006). Uses and Abuses of Empirical Evidence in the Death Penalty Debate. *Stanford Law Review*, Vol. 58: 791-845.
- Ehrlich, Isaac. (1975).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A Question of Life and Dea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5 (3): 397-417.
- Fagan, Jeffrey (2006). Death and Deterrence Redux : Science, Law and Causal Reasoning on Capital Punishment. *The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Vol. 4: 255-320.

- Fagan, Jeffrey, Franklin E. Zimring, and Amanda Geller. (2006) Capital Punishment and Capital Murder: Market Share and the Deterrent Effects of the Death Penalty. *Texas Law Review*, Vol. 84: 1803-1867.
- Fox, J.A. and Radelet, M.L. (1989). Persistent Flaws in Econometric Studies of the Deterrent Effect of the Death Penalty.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 Vol. 23, 29-44.
- Grogger, J. (1990)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An Analysis of Daily Homicide Count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85: 295-303.
- Hjalmarsson, Randi (2009). Does Capital Punishment Have a "Local" Deterrent Effect on Homicides? *American Law and Economic Review*, Vol. 11: 310-334.
- Hugo Adam Bedau (1997). *The Death Penalty in America* The Oxford University Press.
- Jacoby, Joseph E., Bronson, Eric F., Wilczak, Andrew R., Mack, Julia M., Suter, Deitra, Xu, Quing, and Rosenmerkel, Sean P. (2008). The Newsworthiness of Execution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nd Popular Culture*, Vol. 5 (2): 168-188.
- Katz, Larence, Levitt, Steven D., and Shutorovich, Elle. (2003). Prison Conditions, Capital Punishment, and Deterrence. *Law and Economic Review*, Vol. 5 (2): 318-343.
- Kleck, Gary D. (1979). Capital Punishment, Gun Ownership, and Homicid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4: 882-910.
- Kovandzic, T., Vieraitis, L.M. and Boots, D.P. (2009) Does the Death Penalty Save Lives? New Evidence from State Panel Data, 1977 to 2006. *Criminology and Public Policy*, Vol. 8: 803-843.
- Land, Kenneth C., Teske Jr., Raymond H. C., and Zheng, Hui. (2012). The

- Differential Short-term Impacts of Executions on Felony and Non-Felony Homicides. *Criminology and Public Policy*, Vol. 11: 541-563.
- Land, Kenneth C., Teske Jr., Raymond H. C., and Zheng, Hui. (2009). The Short-term Effects of Executions on Homicides, Deterrence, Displacement, or Both? *Criminology*, Vol. 47 (4): 1009-1043.
- Layson, Stephen. (1985). Homicide and Deterrence: A Reexamination of the United States Time-Series Evidence. *Southern Economic Journal*. 52: 68-89.
- McFarland, Sam G. (1983). Is Capital Punishment a Short-term Deterrent to Homicides? A Study of the Effects of Four Recent American Execution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Vol. 74: 1014-1032.
- Mocan, H. Naci and R. Kaj Gittings. (2003). Getting off death row: Commuted sentences and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46: 453-478.
- Nagin, Daniel S.. (2013). “Deterrence: A Review of the Evidence by a Criminologist for Economists.” *Annual Review of Economics*, Vol. 5:83:106.
- Peterson, Ruth D. and William C. Bailey. (1991). Felony murder and capital punishment: An examination of the deterrence question. *Criminology*, Vol. 29 (3): 367-395.
- Phillips, David P. and John E. Hensley. (1984). When violence is rewarded or punished: The impact of mass media stories on homicid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4 (3): 101-116.
- Shepherd, Joanna M. (2005) Deterrence versus Brutalization: Capital Punishment’s Differing Impacts among States. *Michigan Law Review*, Vol. 104: 203-256.
- Shepherd, Joanna M. (2004). Murders of passion, execution delays, and the deterrence of capital punishment.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33: 283-321.

- Stolzenberg, Lisa and Stewart J. D'Alessio. (2004). Capital punishment, execution, publicity and murder in Houston, Texa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Vol. 94 (2): 351-380.
- Thomson, Ernie. (1999). Effects of an execution on homicides in California. *Homicides Studies*, Vol. 3: 129-150.
- Thomson, Ernie. (1997). Deterrence versus brutalization: The case of Arizona. *Homicides Studies*, Vol. 1: 110-128.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ational Judicial Reporting Program, 2006. ICPSR27701-v2.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distributor], 2011-03-08. <http://doi.org/10.3886/ICPSR27701.v2>.
- Yang, Bijou and Lester, David. (2008). The Deterrent Effect of Executions: A Meta-Analysis Thirty Years after Ehrlich.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36 (5): 453-460.
- Yunker, James A. (2001). A New Statistical Analysis of Capital Punishment Incorporating U.S. Postmoratorium Data.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82 (2): 297-311.
- Yunker, James A. (1976). Is the Death Penalty a Deterrent to Homicides? Some Time Series Evidence. *Journal of Behavioral Economics*, Vol. 5 (1): 45-81.
- Zimmermann, Paul R. (2006). Estimates of the Deterrent Effect of Alternative Execution Methods in the United States: 1978-2000.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65: 909-941.
- Zimmerman, Paul R. (2004). State executions, deterrence, and the incidence of murder. *Journal of Applied Economics*, Vol. 7: 163-193.
- Zimring, Franklin E., and Gordon J. Hawkins. (1973). *Punishment in Crime Deterrence; Crime Preven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ecent Trends in the Empirical Studies of the Deterrent Effect
of the Death Penalty on Homicides :
Focusing on the Empirical Studi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ong, Moon-ki*

There has been little empirical research on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on homicide in South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survey of prior research on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on homicide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s the full range of research methods of the previously published econometrics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methods used in the previous studies are summarized in order: (1) research design, (2) research data, (3) the independent variable of main interest, (4) dependent variable, and (5) a list of control variables.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a review of the recently published studies on capital punishment in South Korea.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in South Korea are discussed.

❖ Keyword: Death Penalty, Executions, Deterrence, Punishment, Murder

투고일 : 2월 28일 / 심사일 : 3월 24일 / 게재확정일: 3월 24일

* Research Intern in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h.D.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